

(앞쪽)

제 호

역학조사반원증

사 진

3cm×4cm

(모자를 벗고 상반
신을 배경 없이 6
개월 이내에 촬영
한 것)

성 명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

55mm×80mm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
(색상: 연하늘색)

(뒤쪽)

역학조사반원증

소속:

직위/직급:

성명:

생년월일:

위 사람은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
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
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합니다.
년 월 일
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

직인

1. 이 증표를 지닌 사람이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「수산생물질병 관리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되며,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같은 법 제55조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2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
3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.